

대구광역시 서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

1. 검토과정

- 제출일자 : 2020. 11. 13.
- 제출자 : 서구청장
- 검토일자 : 2020. 11. 18.

2. 근거법령

- 「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조, 제9조

3. 주요내용

- 총칙(안 제1조~제4조)
-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(안 제5조, 제6조)
-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 관한 사항(안 제7조~제22항)
- 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 및 진흥 등에 관한 사항(안 제23조~제25항)

4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
공공디자인의 진흥과 품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함으로써
원활한 공공디자인이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,
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다고 사료됨.